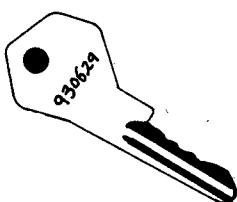




## 약사들은



## 만능인가



최진호  
최진호 연구소

**요**즘 한의사들과 약사들의 조업권 다툼은 극한적인 대립상태로 치닫고 있는듯하다. 한의사들은 면허를 반납하기로 결의하는가 하면(철회하기는 했지만) 한의과 대학생들은 이 문제로 수업을 거부하여 결국은 집단유급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다. 이에 대응해서 전국의 약사들은 약국휴업으로 맞서는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부가 막강한 약사회의 힘에 밀려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자초하여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출발부터가 다르다. 확실한 실험과 이론적인 배경을 기초로 발전해온 서양의학에서는 이론적인 뒷받침은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경험론에 기초한 동양의학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아 왔었다. 그러나 과학의 힘을 과신하던 서양의학자들도 점차 인간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침구술을 비롯한 동양의학인 신비스러운 효과를 인정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서양의학 및 이에 기초한 약학과 동양의 한의학과는 엄연히 별개의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의학과, 약학과가 있는데도 별도로 한의학과를 신설한 것으로 생각한다.

약사들의 주장 중에는 “한약도 약이므로 약사들이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지주장임을 알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논리대로라면 치의학도 의학이므로 의학과를 졸업한 의사가 치과진료도 할 수 있다

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일반의학과 치의학에는 기본원리에 있어서 공통점은 많겠지만 취급하는 분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분명하게 나누어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어디 그 뿐인가, 약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수의학도 의학이므로 의사들이 수의과 진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대상은 인간에 국한되지만 수의사들의 진료대상은 모든 가축 이므로 그 범위는 오히려 수의사 쪽이 더 넓다. 따라서 같은 의학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면 수의사들도 사람을 진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또 한가지 약사회 측의 주장은 “약학과의 교과 과정 중에 생약관련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약사들은 충분히 한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본인은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였다. 축산학을 공부하다 보니 인접분야인 수의학 관련 과목인 가축 질병학, 가축 해부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였다.

그렇다면 본인도 수의사와 대등하게 가축의 질병을 진료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예가 어디 이 뿐이겠는가? 사실 모든 학문은 타학문과 연관성이 있고 특히 인접 학문과는 취급하는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공통 부분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자신이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자격을 주장한다면 이 사회는 전문성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사회부는 더 이상의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국 약국의 휴업사태에서 보여



준 약사들의 폭력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는 과격학생들의 데모에서 각목이나 투석 및 화염병등의 폭력을 많이 보아 왔다. 그런데 어디 이러한 행위들만 폭력이겠는가? 전국의 약국들이 동시에 며칠간 휴업함으로써 전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어느 행위에 못지 않는 폭력인 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건강 보호체계에 큰 문제점을 노출시켜 준 약사회의 공로를 인정하고 차제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약사들과 관련된 조업권 다툼은 이 문제만이 아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오랫동안의 논란은 어떤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의 취급은 약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의 취급은 누가 해야 하는가?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가축약품도 일반약사들이 조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의사가 판매하면 위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약사들이 가축의 질병이나 수의약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약품에 있어서 인체약품이나 가축약품의 약리작용의 원리는 같으므로 약사들이 수의학이나 가축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들도 충분히 가축약품을 취급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약사들 중에 자신의 전문대상분야를 가축으로 정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가축약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어느모로 보아도 약사들보다는 수의사들에게 더 전문성이 있음에 틀림없다.

외국에서는 사람에 있어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 동물에게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수의사와 수의약사로 분업해야 마땅하다. 의사와 수의사의 대상분야가 다르듯이 약사와 수의약사의 대상범위도 엄연히 달라야 하지 않은가?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도 의약분업이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축의 의약분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인체의 경우 의약분업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가축의 경우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일이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생각해 보면 가축약품의 취급은 당연히 수의사의 영역이지 약사의 영역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축약품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고 있다. 수

의사들과 약사들과의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의 힘에 눌려 수의사회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얼마전만해도 이 논쟁이 다시 대두되었으나 약사회 측에서 “법은 개정하지 말고 수의사들의 가축약품조제를 묵인하겠다.”는 식의 절충안을 내어서 그런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은 조용해진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확실한 법개정을 통해서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한의사들과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투쟁방법에 있어서도 이들은 농성과 수업거부는 할망정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칭찬하고 싶다.) 수의사들과 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때 수의학도들도 한의학도들과 힘을 합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공동보조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농림수산부의 가축위생과에 한가지 부탁 하고 싶다. 전국의 수의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정부측 주무부서로서 수의사들의 정당한 영역을 찾는데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대신 약품이 아닌것(각종 효소제, 비타민, 광물질 및 아미노산 제재 등)을 약품으로 분류해 놓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처사는 자기의 권리는 남에게 빼앗기고 남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약품이라기 보다는 사료의 특수원료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약품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에서 과감하게 풀어 주고 수의사들이 당연히 행사해야 할 전문분야를 찾는데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 14